

충청남도의회(의장 이복구)는 2003.9.6(토) 11:00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농어촌특별세법유효기간연장건의안, 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 의견 등을 처리하고, 지난 8월 26일부터 시작된 13일간의 의회일정을 모두 마감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국에서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이어 9월 4일과 9월 5일 2차에 거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단(18명)

[위원장] 유태식 의원

[간사사] 정종학 의원

[위사원] 김광만 · 김기영 · 박동윤 · 박영조 · 성기문 · 송영철 · 엄금자 · 오찬규 의원

[위사원] 유병기 · 유영호 · 이은태 · 이종웅 · 임상전 · 조남계 · 차성남 · 최운용 의원

이번 회기동안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심정수)에서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남도시.군 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남도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유병기)에서는 충청남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자동차 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수수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다.

또한,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송민구)는 재단법인금산세계인산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을 심사하고 농어촌특별세법유효기간연장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제172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충청남도 제2의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수정가결(일부승인)
- ▶ 충청남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충청남도 자동차 공히 전제한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 수수료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 재단법인 금산세계인 삼엑스포 조직 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 농어촌 특별 세법 유효기간 연장 건의안 ▶ 원안가결

2003年度 第1回 忠淸南道一般 및 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 修 正 議 決 調 書

### ■ 總 括

#### 〈 일반회계 〉

(단위 : 천원)

| 구 分 | 예 산 안         | 계 수 조 정 내 역 |         |               | 비 고  |
|-----|---------------|-------------|---------|---------------|------|
|     |               | 삭 감         | 증 액     | 사 정 액         |      |
| 세 입 | 1,979,529,000 | -           | -       | 1,979,529,000 | 원안가결 |
| 세 출 | 1,979,529,000 | 616,450     | 616,450 | 1,979,529,000 | 수정가결 |

※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조차

#### 〈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구 分 | 예 산 안       | 계 수 조 정 내 역 |     |             | 비 고  |
|-----|-------------|-------------|-----|-------------|------|
|     |             | 감 액         | 증 액 | 사 정 액       |      |
| 계   | 578,556,000 | -           | -   | 578,556,000 | 원안가결 |
| 일 반 | 212,840,000 | -           | -   | 212,840,000 |      |
| 공기업 | 365,716,000 | -           | -   | 365,716,000 |      |

豫算案 削減額 調書

■ 一般會計

(단위 : 천원)

| 과 목               | 사업명                               | 요구액     | 삭감액     | 증 액 | 사정액     | 비 고 |
|-------------------|-----------------------------------|---------|---------|-----|---------|-----|
| 합 계               |                                   | 816,450 | 616,450 |     | 200,000 |     |
| 201-01<br>일반운영비   | · 역사문화원 설립<br>· 보고서 발간            | 5,000   | 5,000   |     | 0       |     |
| 201-02<br>행사지원비   | · 역사문화원법인설립<br>· 창립총회 운영          | 3,000   | 3,000   |     | 0       |     |
| 301-09<br>행사실비보상금 | · 역사문화원 법인설립 창립<br>총회이사회 참석       | 450     | 450     |     | 0       |     |
| 201-01<br>일반운영비   | · 역사문화원 법인설립 등기<br>수수료 및 창립총회 운영비 | 8,000   | 8,000   |     | 0       |     |
| 306-01<br>출연금     | · 역사문화원 출연금                       | 500,000 | 500,000 |     | 0       |     |
| 307-03<br>사회단체보조금 | · 우수선수 육성                         | 300,000 | 100,000 |     | 200,000 |     |

본 안건은 2003. 9. 3(수)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3. 9. 6(토)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음.

##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 「충청남도 계룡시·농복합형태의 시설 치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03.7.18)됨에 따라 계룡시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논산시의 두마면 선거구를 삭제하고, 계룡시의 선거구를 신설하여 의원정수를 조정하고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02.6.13) 이후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쌍용2동」이 「쌍용2동」과 「쌍용3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천안시의회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변경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논산시의 "두마면 선거구"를 삭제하고, 계룡시의 선거구를 신설하여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함(안 제2조 별표)
- 천안시 쌍용2동이 쌍용2동과 쌍용3동으로 분동되어 "쌍용2동 제1선거구"와 "쌍용2동 제2선거구"를 삭제하고 "쌍용2동 선거구"와 "쌍용3동 선거구"를 신설하여 의원정수를 조정함(안 제2조 별표)

### 3. 참고자료

- 시군별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 현황
- 계룡시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내역
- 관계법령(발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 충청남도시 · 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시 · 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중 천안시란의 "쌍용2동 제1선거구(쌍용1통내지 17통, 쌍용33통내지 34통, 쌍용42통내지 48통, 쌍용57통내지 67통, 쌍용73통내지 78통 일원) 1인"과 "쌍용2동 제2선거구(쌍용18통내지 32통, 쌍용35통내지 41통, 쌍용49통내지 56통, 쌍용68통내지 72통 일원) 1인"을 각각 삭제하고, "쌍용2동 선거구(쌍용2동 일원) 1인"과 "쌍용3동 선거구(쌍용3동 일원) 1인"을 각각 신설하며,

논산시란의 "두마면 선거구(두마면 일원) 1인"을 삭제하고, 논산시란 다음에 계룡시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忠淸南道市 · 郡議會議員選舉區와 選舉區別議員定數

| 選舉區別   | 議員定數 | 選舉區域   |
|--------|------|--------|
| 鷄龍市    |      |        |
| 鷄龍市    | 7    |        |
| 豆磨面選舉區 | 4    | 豆磨面 一圓 |
| 南仙面選舉區 | 2    | 南仙面 一圓 |
| 金岩洞選舉區 | 1    | 金岩洞 一圓 |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  | 개 정 안    |      |         |
|---------------|------|--|----------|------|---------|
| 選舉區別          | 議員定數 | 選舉區域   | 選舉區別     | 議員定數 | 選舉區域    |
| 天安市           |      |  | 天安市      |      |         |
| 天安市           | 26   |  | 天安市      | 26   |         |
| 雙龍2洞<br>第1選舉區 | 1    | 雙龍1統내지 17統,<br>雙龍33統내지 34統,<br>雙龍42統내지 48統,<br>雙龍57統내지 67統,<br>雙龍73統내지 78統<br>一圓 |          |      | 〈삭제〉    |
| 雙龍2洞<br>第2選舉區 | 1    | 雙龍18統내지 32統,<br>雙龍35統내지 41統,<br>雙龍49統내지 56統,<br>雙龍68統내지 72統<br>一圓                |          |      | 〈삭제〉    |
| 〈신설〉          |      |  | 雙龍2洞 選舉區 | 1    | 雙龍2洞 一圓 |
| 〈신설〉          |      |  | 雙龍3洞 選舉區 | 1    | 雙龍3洞 一圓 |
| 論山市           |      |  | 論山市      |      |         |
| 論山市           | 16   |  | 論山市      | 15   |         |
| 豆磨面 選舉區       | 1    | 豆磨面 一圓   |          |      | 〈삭제〉    |
| 鶴龍市           |      |  |          |      |         |
| 〈신설〉          |      |  | 鶴龍市      | 7    |         |
|               |      |  | 豆磨面 選舉區  | 4    | 豆磨面 一圓  |
|               |      |  | 南仙面 選舉區  | 2    | 南仙面 一圓  |
|               |      |  | 金岩洞 選舉區  | 1    | 金岩洞 一圓  |

## 참 고 자 료

### ■ 市郡別 選舉區 및 議員定數 調整 現況

| 구 분 | 선 거 구 |     |    | 의 원 정 수 |     |    | 조 정 사 유        |
|-----|-------|-----|----|---------|-----|----|----------------|
|     | 현행    | 개정  | 증감 | 현행      | 개정  | 증감 |                |
| 계   | 209   | 211 | 2  | 209     | 215 | 6  |                |
| 천안시 | 26    | 26  |    | 26      | 26  |    | 쌍용2동⇒쌍용2·3동 분동 |
| 공주시 | 15    | 15  |    | 15      | 15  |    |                |
| 보령시 | 16    | 16  |    | 16      | 16  |    |                |
| 아산시 | 17    | 17  |    | 17      | 17  |    |                |
| 서산시 | 15    | 15  |    | 15      | 15  |    |                |
| 논산시 | 16    | 15  | △1 | 16      | 15  | △1 | 두마면 선거구 삭제     |
| 계룡시 |       | 3   | 3  |         | 7   | 7  | 시 신설에 따른 증가    |
| 금산군 | 10    | 10  |    | 10      | 10  |    |                |
| 연기군 | 9     | 9   |    | 9       | 9   |    |                |
| 부여군 | 16    | 16  |    | 16      | 16  |    |                |
| 서천군 | 13    | 13  |    | 13      | 13  |    |                |
| 청양군 | 10    | 10  |    | 10      | 10  |    |                |
| 홍성군 | 12    | 12  |    | 12      | 12  |    |                |
| 예산군 | 13    | 13  |    | 13      | 13  |    |                |
| 태안군 | 8     | 8   |    | 8       | 8   |    |                |
| 당진군 | 13    | 13  |    | 13      | 13  |    |                |

### ■ 雞龍市 基礎議會議員 選舉區 劃定 内譯

| 선거구명       | 의원수(정수) | 선 거 구 역  | 비 고 |
|------------|---------|--|-----|
| 계          | 7인      | (15개리, 30,729인)  |     |
| 두마면<br>선거구 | 4인      | (9개리, 20,786인)<br>엄사리(15,617), 향한리(311), 도곡리(319), 광석리(292), 유동리(2,418),<br>두계리(904), 왕대리(356), 입암리(199), 농소리(370) |     |
| 남선면<br>선거구 | 2인      | (5개리, 8,723인)<br>남선리(8,484), 부남리(222), 석계리(2), 정장리(5), 용동리(10)   |     |
| 금암동<br>선거구 | 1인      | (1개리, 1,220인)<br>금암리(1,220)  |     |

## ■ 關係 法令 拔萃

### ○ 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충청남도 계룡시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구역) ①충청남도에 계룡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명 칭   | 관 할 구 역         |
|-------|-----------------|
| 계 룡 시 | 충청남도 논산시 두마면 일원 |

②충청남도 논산시 관할구역중 두마면 지역을 제외한다.

### ○ 지방자치법

####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거친 후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있어서는 그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이하 "자치구·시·군의회"라 한다)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동과 군사분계선 지역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한다)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과 5만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다.

# 충남도의회 소식

-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가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수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과 동을 통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②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는 읍·면·동(제23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된 때에는 그 통합된 구역을 말한다)을 단위로 획정하되, 선거구의 명칭·구역과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중원되는 읍과 동에서 선출하는 의원수는 선거구별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지 않는 읍·면·동에 통합되어야 하며,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는 경우에는 통합하기 전의 읍·면·동을 각각의 선거구로 한다.

## 제28조 (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등)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선거구 또는 그 구역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선거구의 선거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를 조정하고, 제3호 단서·제5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중원선거를 실시한다.

5. 읍 또는 면이 시로 된 때에는 시의회를 새로 구성하되, 최초로 선거하는 의원의 수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정수로부터 당해 지역에서 이미 선출된 군의회의원의 수를 뺀 수로 하고, 종전의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시의회의원이 된다.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

제2조(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선거구별 의원정수 산정방법) 법 제23 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7인에 미달되는 수에 자치구·시·군의 인구에 대한 각 선거구의 인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중 정수부분이 있으면 그 정수만큼 해당 선거구에 추가하고, 소수점 이하 부분은 그 수가 큰 순으로 해당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수가 7인에 달할 때까지 1인씩 그 선거구에 추가한다.

## ○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 중 "쌍용2동"란 다음에 "쌍용3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무소명 | 소재지           |
|------|---------------|
| 쌍용3동 | 천안시 백석동 255-1 |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3.7.1 공포)
- ②(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쌍용3동사무소가 개청한 날부터 적용한다.

본 안건은 2003. 9. 3(수) 제6차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3. 9. 6(토)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음.

## 재단법인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

### 1. 개정이유

- 한국인삼은 인삼의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에서 위축 추세
  - 외국의 저가·대량물량공세와 체열상승소문·농약검출 등으로 한국인삼 수요감소와 국제경쟁력 저하
  - 인삼제품 수출 '90) 165백만불 → '02) 55백만불 ( $\Delta$  67%)
- 호주·미국의 인삼재배·수출 등 세계시장 유통경쟁환경이 급변
  - ⇒ 인삼을 한국의 대표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응전략 필요
- 산업자원부는 인삼을 세계일류수출전략품목으로 지정, 육성의지를 천명하였으며 농림부 등 중앙정부차원의 인삼산업 육성시책과 병행하여 한국인삼의 전 세계적 홍보를 위한 장(場) 마련
- 우리나라 인삼의 메카(Mecca)라 할 수 있는 금산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금산인삼축제를 인삼관련세계유일의 축제로 육성, 금산의 지역문화진흥 및 인삼산업중심지로서의 위상정립.
- 이에 따라 홍보·마케팅중심의 국제행사 개최필요성 대두
  - 한국인삼의 브랜드가치제고 및 수출증대와 인삼국내수요 확대를 통한 한국인삼산업의 진흥을 위해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코자 하며 행사의 성공을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 2. 주요골자

- 도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명칭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라 하며 재단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집행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법인의 재산은 충청남도, 관내 시·군 자치단체 및 그 외의 출연금과 지원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4조)

- 다.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재단에서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재단에 대한 검사기준을 마련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 마.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을 파견 근무하게 하도록 함(안 제9조)

### 3. 참고사항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기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감독)
-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파견근무)

충청남도 조례 제 호

## 재단법인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인삼엑스포개최와 관련한 행사의 준비와 조직의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명칭 및 기구 등) ①충청남도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②재단에 세계인삼엑스포집행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세계인삼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3. 세계인삼엑스포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4. 세계인삼엑스포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5.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법인의 재산) 법인의 재산은 충청남도와 관내 시·군 및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한다.

제5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단 경비 등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7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검사 등) ①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파견 등) ①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출연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라 귀속한다.

제11조(공공시설 사용 등) 도지사는 세계인삼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參考事項

#### 〈민법〉

-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 대부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14조(감독) ①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주무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할 때

2. 당해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 〈지방재정법〉

-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 제4조(보조대상) 도지사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 제30조의 4 (파견근무) ①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 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